

南北韓 法制比較의 課題와 方法

崔 鐘 庫*

◇ 차 례 ◇

- | | |
|-------------|--------------|
| I. 서 론 | III. 법학과 법사상 |
| II. 법률의 체계 | IV. 법생활 |
| 1. 남한의 법률체계 | V. 남북통일과 통일법 |
| 2. 북한의 법률체계 | VI. 결 론 |

I. 서 론

한 나라의 구조를 알려면 法制를 보는 것이 첨경이고, 그 나라의 법제를 알려면 외국의 법제와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은 긴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¹⁾ 한 민족, 한 나라이면서도 남한과 북한은 분단 45여년 동안 이질화의 극단으로 달려 피와 언어의 공통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제도와 생활습관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이러한 상극을 이루어 놓았다는 현실이 서글프면서도, 세계에 유례를 볼 수 없는 극단적이고도 모진 현상으로 되는 것은 이데올로기만 탓할 것이 아닌 한국민족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것은 독일이 통일을 이루고 난 후 더욱 분명해지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은 독일의 통일과정과 같은 상황도 아니요 그렇게 통일될 수도, 되어서도 안된다는 인식이 더욱 커지고 있다. 어쨌든 이러한 ‘한국적’인 무엇에 기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1) H. Ehrmann, *Comparative Legal Cultures*, Prentice-Hall, 1976; M. Glendon & others, *Comparative Legal Traditions*, West Publishing Co., 1982.

초하여 남북은 매우 다른 법제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²⁾ 굳이 法制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할른지 모르겠으나, 여기서는 남북의 법률체계, 법학과 법사상, 법생활을 비교하여 일종의 남북한 법문화 전체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매우 이질적인 남북법제를 법률텍스트만 비교한다고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음은 말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광범하고 소루할 수 있지만 이러한 巨視的 분석이 일단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미흡한 북한법자료를 갖고 이러한 전반적 묘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지만, 나무만 보아서 위치조차 알 수 없기에 숲을 보려는 노력이라 할 것이다.³⁾ 북한법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또한 매우 진지하게 제기되는 문제의식은, 남한의 법제와 현저히 다르고 미발달된 것 같이 보이지만 남한법이라고 하여 과연 좋기만 하며 바람직스런 것인가 하는 반성적 자의식이다. 통일을 내다보면서 남한법과 북한법을 통틀어서 어떤 ‘통일법’을 구상해 본다 할 때 그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이것은 너무나 거창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깊이 다를 것은 아니지만, 남북의 법제를 비교하면서 잊어서는 아니될 시각이요 태도라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거나와 북한법의 ‘低質’과 ‘未發達’이 남한법의 문제성을 정당화하고 우월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법 전반에 걸친 비교를 제한된 지면 안에 하려니 매우 간략한 설명식으로 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기 바란다. 비교의 기초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을 비교해야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면 더욱 큰 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이런 견지에서 보면 남한법과 북한법은 매우 이질적이라는 점에서 비교하기가 매우 힘든 일이며, 그러면서도 남의 나라도 아닌 한 나라의 법끼리를 비교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일종의 책임회피라는 현실적 요청이 염연히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남북한의 헌법, 행정법, 민법, 형법, 소송법 등에 관하여 법률을 근거로 한 비교연구들이 상당히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비교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위험은 자

2) 북한법에 대하여는 최종고외, 「북한의 법과 법이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8; 법제처, 「북한법제개요」, 한국법제연구원, 1991; Seung-yoon Cho, *Law and Legal Literature in North Korea*,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D.C., 1991.

3) 지금까지 필자가 쓴 북한법에 관한 논문으로는, “북한의 법학과 법이론”, 「북한의 법과 법이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8; “북한의 법사상”, 「한국법사상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북한의 법학”, 「한국법학사」, 박영사, 1990; “북한법의 구조와 사상”, 「북한연구」 2권1호, 1990; “북한의 전통법사관”, 서울대학교 「법학」 31권1·2호, 1990; “북한의 입법활동과 법생활”, 「북한연구」 3권1호, 1992; “사회주의법 일반이론에서 본 북한법사상”, 「북한법률행정논총」 9집(고려대), 1992; “북한의 법규범과 법현실”, 서울대학교 「법학」 33권 1호, 1992.

첫하면 추상적인 평면적, 제도론적 비교에 그치고 만다는 사실이다. 법을 법전 속의 법(law in book)과 생활 속의 법(law in action)으로 나누어 본다면, 북한법에 관하여는 이 둘다 정확히 아는 것이 어렵고, 남한법에 관하여는 법전 속의 법을 안다 하더라도 생활 속의 법을 바르게 파악하기란 쉽지 아니하다.

이 글에서도 이러한 불완전하고 어려운 상태에서 완전하고 총체적인 남북한 법비교를 한다는 것은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말해둔다. 어디까지나 하나의 시론(試論)이고 탐색이라 할 것이다.

II. 법률의 체계

‘비교’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제일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은 남북한의 법률이 어떻게 되어있는가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자본주의법과 사회주의법으로서의 기본적 ‘체계’와 ‘사상’ 자체가 판이하기 때문에 법률체계와 내용을 파악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인 윤곽을 그려보자면, 다음과 같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1. 남한의 법률체계

남한의 법률체계는 우선 「法典」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국내용으로 가장 방대한 것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大韓民國現行法令集」 전50권으로 1개월에 1회씩 추록을 발행하여 加除式으로 정리하도록 되어 있다.

단행본으로 된 법전으로는 현암사의 「法典」과 법전출판사의 「大法典」 등이 있는데, 한 개인출판사가 공포된 법령을 ‘상품화’하여도 하등의 잘못이 아니다. 외국용으로는 한국법학원에서 낸 *Laws of Republic of Korea (1984)*라는 3권으로 된 영문법령집과 한국법제연구원이 내는 *Current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1983)*가 있다.⁵⁾

가장 광범하게 현행법령 전체를 수록하고 있는 법제처 편찬의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의 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⁶⁾

4) 베틀러/박홍규역, 「자본주의법과 사회주의법」, 일월서각, 1990 ; Mary A. Glendon & others, *Comparative Legal Tradition*, West Publishing Co., 1982, pp. 258~384.

5) 독일어로는 한국민법전이 *Bürgerliches Gesetzbuch von Korea*, übersetzt von Kyuchang Cho (박영사, 1988)가 있다.

6) 아래의 분류는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제50권 색인편의 분류를 참고하였음.

법제 연구/제 2 권 제 1 호

권 별	편 별	내 용
제 1권	1. 헌 법	헌법전, 국가·국민, 헌법재판소
	2. 국 회	국회·국회의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제 2권	3. 선거·정당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국민투표, 정당·정치자금
제 3권	4. 행정일반	행정조직 일반, 행정작용 일반, 문서·관인
제 4권	5. 국가공무원	통칙, 임용, 보수, 실비변상, 복무·능률·교육훈련, 정계·소청, 연금
제 5권	6. 법 원	조직, 법원행정, 집달관, 법무사
제 6권	7. 법 무	행정조직·통칙, 법무행정, 변호사·공증인, 국적·출입국, 법률구조·범죄피해자구조
제 7권	8. 민사법(1)	민법, 상법, 민사절차
제 8권	8. 민사법(2)	동기, 공탁, 호적
제 9권	9. 형사법	형법, 보안처분, 형사절차, 교정·보호, 형사보상, 사면·복권
제10권	10. 지방제도(1)	행정조직·통칙, 지방자치, 지방공무원
제11권	10. 지방제도(2)	지방재정·지적, 지방공기업, 지역개발
제12권	11. 경 찰	행정조직·통칙, 경찰직무, 경찰공무원, 경비·방호, 보안, 교통
제13권	12. 민방위·소방	민방위, 소방
제14권	13. 군사(1)	행정조직·통칙, 군인·군무원인사, 상훈·예식, 군수·재무, 군사보안·군사시설, 군통신, 계엄·징발
제15권	13. 군사(2)	군법·군사법원, 비상대비지원관리
	14. 병 무	행정조직·통칙, 병무, 예비군, 재향군인단체
	15. 국가보훈	행정조직·통칙, 국가보훈
제16권	16. 교육·학술(1)	행정조직·통칙, 학교교육
제17권	16. 교육·학술(2)	학교보건, 학·예술진흥, 사회교육, 국외유학·재외국민교육, 체육·청소년육성
제18권	17. 문화·공보	행정조직·통칙, 문화·예술, 문화재, 언론·출판·저작권, 방송, 종교·사회단체
제19권	18. 과학·기술	행정조직·통칙, 과학기술진흥, 원자력, 천문·기상
제20권	19. 재정·경제일반(1)	행정조직·통칙, 예산·회계

권 별	편 별	내 용
제21권	19. 재정 · 경제일반(2)	국유재산, 물품관리, 채권관리, 회계검사, 공인회계사, 정부투자기관관리, 물가 · 공정거래 · 외자, 통계
제22권	20. 내국세(1)	행정조직 · 통칙, 조세통칙, 목적세, 간접세
제23권	20. 내국세(2)	직접세
제24권	21. 관 세	행정조직 · 통칙, 관세
	22. 담배 · 인삼	통칙, 담배, 인삼
제25권	23. 통화 · 국채 · 금융	행정조직 · 통칙, 통화 · 국채, 금융통칙, 금융기관 · 금융업, 신탁업, 보험, 증권 · 자본시장, 외환, 금융지원등, 저축장려
제26권	24. 농업(1)	행정조직 · 통칙, 농지, 양정, 잠업
제27권	24. 농업(2)	농 정
제28권	25. 축 산	행정조직 · 통칙, 축산진흥, 초지 · 사료, 가축위생 · 축산물검사, 경마
	26. 산 림	행정조직 · 통칙, 산림, 조수보호
제29권	27. 수 산	행정조직 · 통칙, 수산진흥, 수산업, 수산자원보호, 수산물검사, 어항 · 어선
제30권	28. 상업 · 무역 · 공업	행정조직 · 통칙, 중소기업, 상업 · 상공인 단체, 무역, 공업
제31권	29. 공업규격 · 계량	행정조직 · 통칙, 공업 표준, 공산품품질관리, 계량
	30. 공업소유권	행정조직 · 통칙, 특허 · 실용신안, 의장 · 상표
제32권	31. 에너지이용 · 광업	행정조직 · 통칙, 에너지이용, 광업
제33권	32. 전기 · 가스	행정조직 · 통칙, 전기, 가스
제34권	33. 국토개발 · 도시	행정조직 · 통칙, 국토개발, 도시
제35권	34. 주택 · 건설 · 도로	행정조직 · 통칙, 주택, 건축, 도로
제36권	35. 수자원 · 토지 · 건설업	행정조직 · 통칙, 수자원 · 풍수해대책, 토지 · 측량, 건설업 · 중기관리
제37권	36. 공중위생 · 의사	행정조직 · 통칙, 공중위생, 의사 · 혈액관리
제38권	37. 약 사	행정조직 · 통칙, 약사, 마약등, 독물 · 극물
	38. 사회복지	행정조직 · 통칙, 사회복지 · 통칙, 생활보호, 재해구호, 아동 · 노인 · 장애자 · 모자복지, 사회보험, 가정의례

법제연구/제 2 권 제 1 호

권 별	편 별	내 용
제39권	39. 환 경	행정조직·통칙, 환경보전, 폐기물관리
제40권	40. 노동(1)	행정조직·통칙, 노정, 근로기준, 산업안전
제41권	40. 노동(2)	직업안정, 직업훈련, 노동보험
제42권	41. 육운·항공·관광(1)	행정조직·통칙, 교통안전, 교통정비, 철도, 삭도·궤도, 관광
제43권	41. 육운·항공·관광(2)	도로운송, 창고, 항공
제44권	42. 해운(1)	행정조직·통칙, 해상운송, 선박
제45권	42. 해운(2)	선원, 항만, 해상보안, 해난심판
제46권	43. 체 신	행정조직·통칙, 우정, 전기통신, 전파관리, 체신금융
제47권	44. 외 무	행정조직·통칙, 외무공무원, 영사, 재외국민, 해외이주
	45. 조약(1)	다자조약
제48권	45. 조약(2)	다자조약
제49권	45. 조약(3)	양자조약
제50권	색 인	가·나·다순 총목차, 권별목차

이 방대한 법령집은 현행헌법,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部令)과 국회 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 등을 총망라하여, 1989년 6월 1일에 제작하여 그 이후에 제정되거나 개폐되는 법령은 추록(加除式)으로 발간하는 방법을 따르고 있다.

편별분류방식은 ① 모든 현행법령을 부문별·성질 및 소관청을 기준으로 하여 편별을 분류하였고, ② 같은 부문에 속하는 조직법규와 작용법규는 그 해당하는 하나의 編으로 분류하였으며, ③ 하나의 법령이 그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중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의 편에 분류하였다. 또 같은 編내에서는 법령의 성질 및 이용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章·節·款으로 분류하여 ① 조직법규는 작용법규와 구별하여 앞세우고, ② 기본법이나 모법적(母法的) 법규는 그 부수법규보다, 일반법은 특별법보다, 실체법은 절차법보다 앞세우고, 장·절·관 내에서는 그 장·절·관의 題名과 가장 밀접한 기본법이나 일반법을 앞세우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리하

여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3,700개 정도의 법령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⁷⁾ 이념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 복지국가, 문화국가, 권력분립주의, 국제평화주의를 지향하면서量에 있어서 ‘법의 홍수’ 혹은 ‘법의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이 틀리지 않을 정도로 많은 법령이 제정 혹은 개정되고 있다. 법치주의 혹은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표방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는 후에 法生活의 章에서 설명하겠다.⁸⁾

2. 북한의 법률체계

북한의 법률체계를 아는 데에 중요한 자료는 「북한법령집」(대륙연구소, 1990),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제정사」(홍극표편, 1986), 「북한법령연표」(최달곤·신영호편, 1990)¹⁰⁾ 등이 있다. 통일법전을 갖고 있지 않은 북한법을 법령집 혹은 연혁집, 혹은 연표의 이름으로 오히려 남한에서 수집·분류 출판해내고 있는 것은 기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만큼 북한법률의 내용을 어떤 ‘체계’에라도 의존하여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민족적 절실성의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북한법령집」의 편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북한법의 ‘체계’를 간음할 수 있다.

제 1 편 헌법

여기에는 1948년에 제정되어 1972년에 「사회주의헌법」으로 개칭된 북한헌법을 비롯하여,¹¹⁾ 선거와 인민회의에 관한 법령들이 포함된다. 선거는 최고인민회의선거와 인민위원회, 인민회의에 관한 것이고, 기타 국적법(1963) 등의 법률이 여기에 포함된다. 사회주의헌법은 1972년 12월 28일에 채택되었는데, 총 11장 149조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1992년 4월 12일 북한최고인민위원회에서 김일성을 대원수로, 김정일을 원수로 추대하면서 북한 헌법 제 1조에 대한 개정이 가결되었다고 보도되었고, 4월 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조항 등 대폭개정이 가결되었다고 보도되

7) 이 가운데는 헌법 1개, 법률 808개, 대통령령 1,360개, 국무총리령 69개, 부령 922개, 조약 254개 및 기타 규칙으로 되어 있다.

8) 참고로 문인구, 「한국법의 實相과 虛相」, 三知院, 1985.

9) 이에 대하여는 최종고, “북한법령집서평”, 「북한연구」, 창간호(1990년 가을호).

10) 원래 「북한법률행정논총」 8집, 1990, 325~435面에 수록된 것을 별책으로 만들었음.

11) 「사회주의헌법」(1972)은 최근 대폭 개정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그 개정 내용은 대충 짐작되지만 정확한 법문은 아직 입수되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 1992년 5월 15일자)

고 있는데,¹²⁾ 자세한 개정문언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조선로동당규약은 1980년 10월 13일에 개정되었는데, 총 10장 60조로 되어 있다.

제 2 편 법원·법무

여기에는 재판소 및 검찰에 관한 규정, 재판소구성법(1950), 군중심판회에 관한 규정(1951), 변호사에 관한 규정(1948) 등이 포함된다. 재판소구성법은 1950년에 제정되었는데 1976년에 개정되었다. 사법성에 관한 규정은 1952년에 제정되었는데 총 9조로 되어 있다. 재판소, 검찰소, 공중소 및 변호사회를 조직·지도하고, 사법성 직속 법률학교를 운영하여 졸업생을 배치한다는 규정이 보인다(제 3조 21항).

제 3 편 행정일반

여기에는 인민위원회, 내각 등 행정조직에 관한 법률과 문서, 상훈, 메달, 포상, 호칭, 경축일 등에 관한 법률이 포함된다. 예컨대 김일성상제정에 관한 규정(1972), 천리마영예상수여에 관한 규정(1968), 새기술혁신봉사상에 관한 규정(1973), 사회주의애국상(1982) 등 각종 애국운동에 관한 포상제도에 관한 법령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내각구성법은 1955년에 제정되어 1962년에 개정되었는데, 총 6조로 되어 있다.

제 4 편 지방행정

지방행정에 관한 법률은 지방행정조직, 지방인민회의, 지방행정에 관한 법령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방이름, 도시이름의 변경 등 지방행정에 관한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이 빈번하다. 예컨대 1981년 8월 「량강도 신와군」을 「김정숙군」으로, 「신파읍」을 「김정숙읍」으로 바꾸는 법률이 장황한 전문을 붙여 채택되었다. 「지방주권 기관구성법」은 1954년 10월 30일 채택된 31조로 구성된 법률인데, “도·시·군(구역), 리(읍·로동자구)에 있어서의 지방주권기관은 해당 인민회의이다”(제 1조)고 규정하고, “인민회의는 관할 지역내 공민들의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된 대의원들로서 구성한다”(제 2조)고 밝히고 있다. 인민회의 대의원은 2년 임기로 활동하도록 되어 있다.

제 5 편 치안

치안편에는 화약류단속에 관한 규정(1949), 교통질서단속에 관한 규정(1949) 등

12) 조선일보 1992년 5월 15일자.

치안에 관한 법률들이 들어있는데, 별로 분량이 많지는 아니하다. 경찰에 관한 규정이 보이지 않는 것도 특색이다. 아마도 치안에 관한 실질적 내용들이 다른 법령속에 분산되어 치안의 개념 자체가 약화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제 6 편 군 사

군사에 관한 법령은 국가기밀과 관련된 것으로 더욱 입수가 쉽지 아니한 것이지만, 군사위원회조직에 관한 정령(1950), 예비의무조조직강화와 민간군사훈련사업의 질적보장을 위한 군사위원회명령(1952), 군사재판소에 관한 규정(?), 조선인민군 전상자 영예회장수여 사업을 조직·진행할 데 대한 내각결정(1959), 개별적 또는 집체적으로 의거하여 오는 적로대복무자들을 대우함에 관한 군사위원회 결정(1964), 민족보위상명령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 7 편 재정·금융

재정·조세·금융·전매에 관한 법령들로서는 예컨대 산업·상업 및 기타부문의 국영기업소·기관들의 독립채산제, 재정계획 및 국가예산과의 호상관계에 관한 규정(1952), 회계규정(1946), 행정기관회계검사에 관한 규정(1948), 국가경제기관, 국영기업소, 협동단체 및 행정기관의 경리책임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1949), 각급행정기관, 국영기업소 및 소비조합들의 경비최고한도에 관한 규정(1949), 물수재산관리에 관한 규정(1948), 국유건물 및 대지관리에 관한 규정(1950) 등이 있다. 조세에 관한 법률이 매우 흥미로운데 원래 소득세법(1947), 주민소득세에 관한 법령(1955), 등록세법(1947), 거래세법(1947), 수출입세에 관한 규정(1948), 가옥세법(1947), 부동산취득세법(1947), 음식세법(1947), 인민학교세법(1947), 대지세법(1947) 등의 세법들이 있었다. 그런데 1974년 3월 21일 김일성 주석의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 데 대하여」라는 교시가 있었고, 이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막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애며, 정무원은 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1974년 4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 후 과연 세금제도가 완전폐지되었는지는 의문시되며, 오히려 합영회사소득세법(1985), 외국인소득세법(1985) 등 조세법률들이 제정되고 있다. 금융에 관하여는 중앙은행 및 농민은행, 국립건설자금은행등에 관한 법률, 저금사업에 관한 법률, 화폐발행에 관한 법률들이 있다.

제 8 편 농림·수산

여기에는 크게 농지개혁, 농지, 농장, 農政, 비료, 농기계, 灌溉, 농업협동조합, 파

법제연구/제 2 권제 1 호

종, 유통, 농업부산물, 果樹, 임업에 관한 농업 관계 법률과 임야관리, 조림, 임산물에 관한 임업 관계 법률, 축산정책과 회계관리, 축산물, 방역에 관한 법률과 수산에 관한 법률들이 포함된다. 대표적인 법률로는 토지관리규정(1960), 국영농장에 관한 규정(1949), 국영농기계임경소에 관한 규정(1950), 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1958), 농업근로자동맹규약(1965), 산림관리에 관한 규정(1950), 국유산림대부에 관한 규칙(1950), 육류수매 및 공급에 관한 규정(1949), 어업에 관한 규정(1949) 등이 보인다.

제 9 편 糧政

여기에는 식량공급에 관한 정책, 수매, 검사, 거래규제, 보관, 창고, 배급에 관한 법률들과 現物稅收納에 관한 농업현물세, 징수, 회계, 특용작물, 현물세징수, 현물세 감면에 관한 법률들이 포함된다. 대표적인 법률로는 식량배급조례(1949), 국가식량 배급에 관한 규정(?), 농업현물세에 관한 법령(1955) 등이 있다.

제10편 산업·건설·상업

여기에는 산업일반, 공업, 열전기공업, 도량형에 관한 법률들과 국토계획건설, 도시, 주택, 수자원에 관한 법률들과 상업일반, 유통기관, 물가에 관한 법률들이 포함된다. 대표적인 법률로는 사업등록에 관한 규정(1948), 제품검사에 관한 규정(1950), 원동기단속에 관한 규정(1949), 토지법(1977), 산업 및 산업발전에 관한 법령(1946), 개인상공업허가에 관한 규정(1955), 합영법(1984) 등이 있다. 이 중 특히 토지법은 1977년 4월 30일에 제정된 총 6 장 80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 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지에는 토지개혁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혁명선렬들의 붉은 피가 스며 있으며 외래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운 인민들의 혁명정신이 깃들어 있다. 국가는 안팎의 온갖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인 토지를 보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합영법은 1984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위원회 결정 제10호로 채택되었는데, 총 5 장 26조로 되어 있다. 제 1조는 “세계의 여러나라들과의 경제기술교류와 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대외경제정책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공화국의 령역안에서 우리나라의 회사·기업소와 다른 나라의 회사·기업소·개인 사이에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합영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하여 얼마나 합영회사가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제11편 교통·체신

여기에는 철도, 자동차, 도로, 해운에 관한 법률들과 우편, 전신, 전화, 전파에 관한 법률들이 포함된다. 대표적인 법률로는 교통국직무규정(1947), 철도운영에 관한 규정(1947), 철도운전에 관한 규칙(1947), 철도운수에 관한 규정(1949), 교통안전에 관한 규칙(1947), 자동차단속규칙(1947), 도로관리에 관한 규정(1949), 우편에 관한 규정(1949) 등이 있다.

제12편 교육·문화·과학

여기에는 교육일반, 의무교육, 대학, 각급학교, 장학금, 사회교육, 특수교육, 학술, 문화, 문화재, 예술, 언론, 출판, 체육에 관한 법령들이 포함된다. 주요한 것들을 보면 인민교육체계를 개편할 데 관한 법령(1959. 10. 28, 총83조), 교학 및 시험에 관한 규정(1950. 4. 13), 국가졸업 및 진급시험에 관한 규정(1950. 3. 11), 전반적 10년제고등의무교육과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을실시할데대하여(1963. 4. 9),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에 관한 법령집행총화에 대하여(1975. 4. 10), 대학에 관한 규정(1949. 12. 22, 총 9장 56조), 교원대학에 관한 규정(1949. 11. 22, 총 9장 50조), 기술전문학교에 관한 규정(1950. 3. 24, 총 7장 68조), 고급중학교에 관한 규정(1959. 4. 8, 총 7장 65조), 인민학교에 관한 규정(1950. 4. 8, 총 6장 54조), 초급중학교에 관한 규정(1950. 4. 8, 총 7장 65조), 로동학원에 관한 규정(1950. 4. 11, 총 7장 43조), 과학원조직에 관하여(1952. 10. 9), 기술인재양성사업을 추진시킴에 대하여(1961. 7. 28) 등이 있다.

제13편 노동

여기에는 노동법, 노동규율, 근로, 휴가, 고용, 임금 등에 관한 법령이 포함된다. 북한의 사회주의로동법은 1978년 4월 1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되어 총 8장 79조로 되어 있다. 그 외에도 단체계약체결에 관한 결정서(1950. 3. 15, 총 7장 71조), 기업소, 사무소내부정리규정(1947. 8. 20), 휴가허여절차에 관한 규정(1949. 11. 4), 로동자임금적용에 관한 규정(1949. 12. 27), 도급로동임금제에 관한 규정(1954. 3. 30, 총 5장 22조) 등이 있다.

제14편 보건·사회

여기에는 보건행정, 보건기관, 환경, 위생, 전염병, 검역, 약사, 사회보장, 생활보

호, 재해구조, 사회보험, 사회단체에 관한 법령이 포함된다. 가장 대표적인 법률로 1980년 4월 3일 제정된 인민보건법은 총 7장 49조로 되어 있다. 제 2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가장 선진적인 인민보건제도가 마련되어 병치료에 대한 걱정을 모르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는 인민들의 세기적 염원이 빛나게 실현되었다”고 규정하여 이 법을 자랑하고 있다. 또 환경보호법이 1986년 4월 9일에 제정되었는데, 총 5장 51조로 되어 있다.

위생검열원에 관한 규정시행세칙(1949. 12. 30)이 총 8장 270조로 북한법령치고는 상당히 방대한 규모를 이루고 있다.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1946. 7. 30)은 총 9조로 되어 있고, 그 시행세칙은 총 29조로 되어 있다. 1976년 4월 9일에 제정된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총 6장 58조로 되어 있는데, 이 법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는다”(제 5조)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법(1946. 12. 15)은 총 14장 175조로 되어 있다.

제15편 司 法

여기에는 민사, 상사, 형사,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 사법에 관한 법령이 포함된다. 북한의 민법전은 1990년 9월 5일에야 제정되었는데 그동안 1982년 12월 7일에 「민사규정」과 1983년 3월 19일 「민사규정잠정시행세칙」을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통일민법전을 기대해왔다. 민법전은 제 1 편 일반제도, 제 2 편 소유권제도, 제 3 편 채권채무제도, 제 4 편 민사책임과 민사시효제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 1 편은 다시 제 1 장 민법의 기본, 제 2 장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 제 3 장 민사법률행위로 구성되고, 제 2 편은 제 1 장 일반규정, 제 2 장 국가소유권, 제 3 장 협동단체 소유권, 제 4 장 개인소유권으로 구성되고, 제 3 편은 제 1 장 일반규정, 제 2 장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 제 3 장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 제 4 장 부당리득행위로 구성되고, 제 4 편은 제 1 장 민사책임, 제 2 장 민사시효로 구성되어, 모두 271조로 되어 있다. 남한 민법전이 총 5편, 1118조로 된 것에 비하면 4분의 1도 되지 않는 小法典이라고 할 것이다. 분량의 다소로 평가할 것은 아니지만, 북한사회에서 얼마나 개인의 사적 생활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한가를 보여 준다 할 것이다. 민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시효에 관한 규정(1961. 7. 11, 총 15조), 토지법(1977. 4. 29, 총 6장 80조), 가족법(1990. 10. 24, 총 6장 54조) 등이 별도로 있다. 북한에서의 ‘민법’개념은 남한의 민법전보다 협소하다는 것이 그 체제상으로 드러난다 하겠다.

형법도 1950년 3월 3일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된 제 1 차 형법전은 총 23장

301조로 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974년 12월 19일에 총 17장 215조로 개정하였고, 1987년 2월 5일 다시 개정하였는데 총 8장 161조로 되어 있다.¹³⁾ 이 '개정' 형법전에 관하여는 그 자료방출의 경위 등으로 보아 과연 형법개정이 있었는가를 의문시 하는 관측도 있으나 어쨌든 북한은 형법개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⁴⁾ 어쨌든 남한형법이 총 42장 372조로 되어 있는데 비하면, 북한 형법은 간소화되어 있다.

소송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은 1974년 1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에 의해 채택되었는데, 총 13장 177조로 되어 있다.¹⁵⁾ 형사소송법은 1950년 3월에 제정된것을 1976년에 1차개정이 있었고, 1992년 1월 15일 다시 개정하였다.¹⁶⁾ 50년 제정 형소법은 총 25장 281조였는데, 1992년 개정 형소법은 총 10장 18절 305조로 되어 있다.

북한의 재판소구성법은 1976년 1월 10일 개정되었는데, 총 5장 45조로 되어,¹⁷⁾ 남한의 법원조직법이 총 14장 79조로 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여 간소하다.

그 외에도 북한의 판사, 검사, 변호사 등 法曹制度에 관한 각종 법률과 법학교육, 법률가 양성에 관한 법령 등이 있을텐데, 지금까지 입수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법현실을 알려면 이 방면의 자료가 매우 중요한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북한의 법원에서 나오는 판결들에 관한 판례집은 전혀 볼 수 없으니 북한에서의 법집행의 현실을 분석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III. 법학과 법사상

법학을 일단 법률의 해석이론에 관한 학문이라고 본다면, 북한의 법학은 위에 검토한 북한법률체계에 기본적으로 기초하여 형성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¹⁸⁾ 북한

13) 자세히는 김일수, '북한형법의 변화 어디까지 왔나?'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최 심포지움 (1991. 11. 30). 그리고 동인, 「북한형법 40년」, 「북한법률행정논총」 8집, 1990, 57~94면.

14) 이동복(남북조절위원회 대변인), 남북대화의 현황과 전망, 「북한법강좌」(한국법학원 주최, 1992년 4월 14일)에서 증언.

15) 자세히는 정동윤, "북한민사소송법의 주요 내용과 특색", 「북한법률행정논총」 8집, 1990, 159~192면.

16) 자세히는 박동희, "북한형사소송법", 「북한의 법과 법이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8, 241~265면; 개정 형소법의 내용과 입수경위에 관한 보도들은 「중앙일보」 1992년 6월 8일자, 1면

17) 자세히는 정동윤, "북한의 재판소구성법", 「북한법의 변화 어디까지 왔나」, 고려대 법학연구소, 1991.

18) 자세히는 최종고, "북한의 법학", 「韓國法學史」, 박영사, 1990, 523~581면.

법학에 관하여는 다행스럽게도 1971년에 평양사회과학출판사에서 간행한 「법학사전」이 입수되어 대체적인 개념과 구성에 관한 이해를 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¹⁹⁾ 그렇지만 이 사전 역시 내용이 그리 풍부하지 못하고 주체사상에 의하여 각색된 서술이 많기 때문에 북한법학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미흡하다.

각 법역별로 쓰여진 법학서적도 빈약하고, 논문집, 잡지나 신문류에 실리는 법학논문도 그 양에 있어서나 질에 있어서 미약한 상태이다. 한마디로 북한에서는 법학이 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 司法省 법률학교에서 가르치는 전문교육이긴 하지만 경제학이나 역사학, 정치학 등에 비해서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학문인 것 같다.²⁰⁾ 법학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법학도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들이 사용하는 법학서적은 얼마나 출간되었는지 통계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보성전문학교 형법교수로 있던 심현상(沈鉉尙)이 월북하여 김일성대학 법학부 교수로 있으면서 「조선형법해설」(1958)을 쓴 정도 외에는 북한의 법학자들에 대하여 자세히 아는 바가 없다. 북한법을 이해하는 데에는 법률만이 아니라 법학과 법이론 자체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이 방면의 자료가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북한의 법학자들은 글을 쓰더라도 직합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글 쓴 빈도수와 출처를 보아 심현상, 조동우, 리재도, 방계문, 한락구, 서창섭, 조일호, 김영철, 윤중섭, 정연수, 홍극표, 심형일, 최홍락, 김용철, 김동철, 리경오, 리홍갑, 최학주, 리영애 등이 법학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쓴 법학서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²¹⁾

1) 법 일반

- 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 「법과 공민」, 국립출판사, 1958
- 방계문 등저, 「공화국법은 사회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논문집), 평양사회과학원출판사, 1964
- 「법학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71
-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사회주의법에 관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19) 이 사전은 국판 800면에 달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관하여는 최종고, 「韓國法學史」, 박영사, 1990, 541~571면.

20) 1952년 10월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을 창립하면서 내린 내각결정(제183호)에 따르면, 사회과학분야로는 언어학(김두봉), 문학(홍명희), 경제학(백남운), 역사학(박시형)에 관하여 원사(院士)와 후보 원사를 두도록 하였고, 법학에는 아무도 없다.

21) 이것은 필자가 지금까지 입수 혹은 조사한 자료들을 임의로 분류해 본 것임.

의 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71

• 과학원 경제법학연구소, 「국가관리에서 우리 당 군중로선의 관철」, 과학원출판사, 1963

• 장우어 · 왕숙문/박문철 역, 「법학기본지식강화」, 민족출판사, 1981

• 심형일, 「주체의 법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87

2) 헌법 · 행정법

• 김일성종합대학 국가법강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평양교육도서출판사, 1956

• 과학원 경제법학연구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사회제도」, 과학원출판사, 196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연구론문집」, 사회과학출판사, 197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해설」, 평양인민과학사, 1973

• 「주체의 사회주의헌법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7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 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8

• 김일성, 「조선사회주의 헌법」, 주체사상 국제연구소, 1979

3) 민 법

• 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 「민법 I」(심의용),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3

• 한결, 「민법학」, 김일성대학출판사, 1980

• 윤종철, 「민법학 II」, 김일성대학출판사, 1985

4) 가족법

• 조일호, 「조선가족법」, 평양교과도서출판사, 1958

5) 토지법

• 김일성, 「토지법에 대하여」, 사회과학출판사, 1978

6) 형 법

• 심현상, 「조선형법해설」(총칙), 국립출판사, 1957

• 한락규, 「공화국 형사법법의 발전」, 평양국립출판사, 1960

• 김근식, 「형법학」 I, 김일성대학출판사, 1986(2판)

• 김근식, 「형법학」 II, 김일성대학출판사, 1987(2판)

• 「주체의 형법이론」, 김일성대학출판사, 1987

7) 노동법 · 경제법

• 조봉우, 「공화국 노동법의 발전」, 평양국립출판사, 1960

- 과학원 경제법학연구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사회제도」, 과학원출판사, 1963
- 홍극표 · 한석봉, 「사회주의관리법과 규정등을 완성할 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73

8) 소송법

- 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 「민사소송법」, 김일성대학출판사, 1978
- 김정규 · 리황, 「중재법」, 김일성대학출판사, 1985
- 「형사소송실무」, 김일성대학출판사, 1988

9) 사법제도

- 리재도, 「공화국 재판법의 발전」, 평양국립출판사, 1960

10) 법제사

- 윤국일, 「경국대전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 안옥형, 「우리나라 법의 발전」, 1960
- 장룡덕, 「일제 침략자들이 조선에서 꾸며낸 식민지 악법의 반동적 본질」, 사회과학출판사, 1976

- 홍극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11) 법무생활

- 김영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 법무생활에 관한 리론」, 백과사전출판사, 1980
- 서창섭, 「법건설경험」, 사회과학출판사, 1984
- 김재한, 「어린이보육교양경험」, 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86
- 리경혜, 「여성문제해결경험」, 사회과학출판사, 1990

이 정도의 파악에 불과하지만, 이쯤에서라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이 모든 법이
론서들이 철저한 사회주의 내지 주체사상에 입각해 있다는 사실이다.²²⁾

남한법학에서와 같이 어떤 이론에 대한 찬반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김일성과 김
정일의 語錄을 빈번히 인용하면서 그것을 해설하는 典據主義式 서술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여기서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논할 처지는 못되
며, 그것이 북한법학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점만 지적한다.²³⁾

남한법학에 대하여도 법률체계와 그에 따른 이론화, 이론과 판례의 괴리, 다른 학

22) 자세히는 최종고, “북한의 法思想”, 「韓國法思想史」, 서울대 출판부, 1989, 387~416면.

23) 최종고, “북한법의 구조와 사상”, 「북한연구」 1990년 겨울호, 28~54면.

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학문성과 비중 등 논할 점이 적지 않으나 지면관계로 생략할 수 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비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법학보다는 다양한 학문적 전개가 있지만, 남한법학도 선진 법치국가들에 비해서 아직 미발달된 단계에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²⁴⁾

IV. 법생활

법을 실제 생활 속에 어떻게 경험·실천하며 살아가느냐는 문제는 법의 지배(rule of law)의 實體를 들여다보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사실 남북 모두 이 방면이 매우 어두운 측면이다.

남한이라 하여 국민이 법을 어떻게 ‘생활화’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잘 알려진 것이 아니다. 역시 법은 법전에 쓰여진 규범이고, 법률가들에 의하여 집행되는 메카니즘 이지 국민일반이 법을 자기 것으로 體化하여 준수하는 면에서는 아직도 저조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법지키기를 강조하고 준법정신을 찬양한다. 그러나 정부의 슬로건이 큰 만큼 국민들은 어쩐지 ‘법대로 하기’를 비판적으로 보고, 위법과 탈법의 현상이 만연해가고 있다. 폭력과 불법에 대하여 1990년부터 ‘전쟁’을 선포하고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지속적인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남한에서의 법생활은 한 마디로 어떻게든 법을 피하여 재주껏 ‘성공’하려고 노력하다가 법에 저촉되면 재판과 형벌로 다스리는 형태인 것 같다.

이에 비해 북한의 법생활은 한마디로 事後的이 아니라 事前的으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教示와 운동에 의하여 단속되는 형태인 것처럼 보인다.²⁵⁾ 북한에는 이러한 법생활을 위하여 이른바 사회주의 법무생활 운동이라 하여 혁명적 준법기풍, 준법교양, 사상투쟁, 모범준법군창호쟁취운동 등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준법교양사업은 추상적인 말로서가 아니라 실물이나 그를 묘사한 각종 직관수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위법현상의 표면형태와 해독성을 생동한 표상으로 안겨줌으로써 준법의식을 키워주는 교양방법²⁶⁾인데, ‘법규법원문침투’와 ‘법해설선전사업’의 두 방 법이 있다. 전자는 국가주석의 명령, 법령, 정령(政令) 등을 원문 그대로 전달하는 사업이며, 후자는 법무해설원들이나 일군들이 법해설자료를 가지고 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상투쟁은 “집요하고 보수적인 낡은 사상전개는 법을 지키지 않는 현

24) 자세히는 최종고, 「韓國法學史」, 박영사, 1991, 517~519면.

25) 자세히는 최종고, “북한의 立法動向과 法生活”, 「북한연구」 1992년 봄호, 7~32면.

26) 리영애, “사회주의 법무생활과 혁명적 준법기풍”, 「법학논문집」 7집, (1990. 1. 15), 16면.

상에 집중포화를 들이대고 된 타격을 안겨주는 사상투쟁의 용광로 속에서만 극복될 수 있고 뿌리뽑을 수 있다”²⁷⁾는 운동이다. 모범준법군청호생취운동은 군(郡)을 단위로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준법의식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인물을 만드는 운동이다. 다각적인 대비책들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북한사회에 범죄와 일탈(逸脫)행위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정치범으로 반당(反黨), 反혁명행위, 탈출범 등이 있고, 인신침해범으로 강간, 간통, 매음, 폭행, 상해, 살인, 낙태, 경제범으로 절도·강간, 청령·사기, 암거래, 청소년범죄로 깡패, 소매치기, 반당행위 등이 있다. 각종 밀고로 인한 치정관계 등도 범죄현상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⁸⁾ 경직된 사회일수록 틈만 생기면 불만이 격화되어 표현될 수 있는데, 최근 북한을 다녀온 중국조선족교포의 목격담은 심각한 범현실을 증언해 준다. 1991년 11월~12월에 그가 북한에 있을 때 자강도 강계, 만포일대에 진행중인 북부철도공사장에 각지에서 정발되어 온 청년돌격대 간에 폐싸움이 벌어졌다. 주모자 한 명이 인민재판을 받아 처형되었는데, 이 재판에 참석했던 사람은 주모자의 아버지가 장작을 쌓고 어머니가 불을 붙였다고 전했다. 이웃의 非行을 두고 5가구가 연대책임을 지는 5호연좌법(五戶連坐法)이 시행되고 있다 한다.²⁹⁾ 이러한 ‘끔찍한’ 극단사례와 조선시대의 五家作統法을 연상케하는 前근대적 통제수단에 의하여서라도 어쨌든 북한은 남한에서만큼 違法과 범죄가 많지는 아니한 사회로 비쳐지고 있다. 법의 통제적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일종의 靜寂社會로 만드는 것같이 보인다.

V. 남북통일과 통일법

이상의 서술이 남한은 남한법제, 북한은 북한법제로 너무나 이질화되어 도저히 공통점을 찾을 수 없는 두 체계인 것처럼 비쳐졌을 것이다.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남한법은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극단적인 개인주의적 법이고 북한법은 사회주의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주체사상의 법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법체계가 서로 대립해 있다는 것은 민족적 불행임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이질성 속에 은연중 한국적 공통성이 엿보이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어차

27) 리영애, 상계논문, 19면.

28) 자세히는 유석렬, “逸脫：원인·유형·통제 방법”, 「북한사회의 구조과 변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7, 61~94면

29) 조선일보 1992년 1월 17일자, 20면.

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학문성과 비중 등 논할 점이 적지 않으나 지면관계로 생략할 수 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비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법학보다는 다양한 학문적 전개가 있지만, 남한법학도 선진 법치국가들에 비해서 아직 미발달된 단계에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²⁴⁾

IV. 법생활

법을 실제 생활 속에 어떻게 경험·실천하며 살아가느냐는 문제는 법의 지배 (rule of law)의 實體를 들여다보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사실 남북 모두 이 방면이 매우 어두운 측면이다.

남한이라 하여 국민이 법을 어떻게 ‘생활화’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잘 알려진 것이 아니다. 역시 법은 법전에 쓰여진 규범이고, 법률가들에 의하여 집행되는 메카니즘 이지 국민일반이 법을 자기 것으로 體化하여 준수하는 면에서는 아직도 저조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법지키기를 강조하고 준법정신을 찬양한다. 그러나 정부의 슬로건이 큰 만큼 국민들은 어쩐지 ‘법대로 하기’를 비판적으로 보고, 위법과 탈법의 현상이 만연해가고 있다. 폭력과 불법에 대하여 1990년부터 ‘전쟁’을 선포하고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지속적인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남한에서의 법생활은 한 마디로 어떻게든 법을 피하여 재주껏 ‘성공’하려고 노력하다가 법에 저촉되면 재판과 형벌로 다스리는 형태인 것 같다.

이에 비해 북한의 법생활은 한마디로 事後的이 아니라 事前의으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教示와 운동에 의하여 단속되는 형태인 것처럼 보인다.²⁵⁾ 북한에는 이러한 법생활을 위하여 이른바 사회주의 법무생활 운동이라 하여 혁명적 준법기풍, 준법교양, 사상투쟁, 모범준법군칭호쟁취운동 등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준법 교양사업은 추상적인 말로서가 아니라 실물이나 그를 묘사한 각종 직관수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위법현상의 표면형태와 해독성을 생동한 표상으로 안겨줌으로써 준법의식을 키워주는 교양방법²⁶⁾인데, ‘법규법원문침투’와 ‘법해설선전사업’의 두 방 법이 있다. 전자는 국가주석의 명령, 법령, 정령(政令) 등을 원문 그대로 전달하는 사업이며, 후자는 법무해설원들이나 일군들이 법해설자료를 가지고 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상투쟁은 “집요하고 보수적인 낡은 사상전개는 법을 지키지 않는 현

24) 자세히는 최종고, 「韓國法學史」, 박영사, 1991, 517~519면.

25) 자세히는 최종고, “북한의 立法動向과 法生活”, 「북한연구」 1992년 봄호, 7~32면.

26) 리영애, “사회주의 법무생활과 혁명적 준법기풍”, 「법학논문집」 7집, (1990. 1. 15), 16면.

상에 집중포화를 들이대고 된 타격을 안겨주는 사상투쟁의 용광로 속에서만 극복될 수 있고 뿌리뽑을 수 있다”²⁷⁾는 운동이다. 모범준법군청호쟁취운동은 군(郡)을 단위로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준법의식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인물을 만드는 운동이다. 다각적인 대비책들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북한사회에 범죄와 일탈(逸脫)행위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정치범으로 반당(反黨), 反혁명행위, 탈출범 등이 있고, 인신침해범으로 강간, 간통, 매음, 폭행, 상해, 살인, 낙태, 경제범으로 절도·강간, 청령·사기, 암거래, 청소년범죄로 깡패, 소매치기, 반당행위 등이 있다. 각종 밀고로 인한 치정관계 등도 범죄현상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⁸⁾ 경직된 사회일수록 틈만 생기면 불만이 격화되어 표현될 수 있는데, 최근 북한을 다녀온 중국조선족교포의 목격담은 심각한 법현실을 증언해 준다. 1991년 11월~12월에 그가 북한에 있을 때 자강도 강계, 만포일대에 진행중인 북부철도공사장에 각지에서 정발되어 온 청년돌격대 간에 패싸움이 벌어졌다. 주모자 한 명이 인민재판을 받아 처형되었는데, 이 재판에 참석했던 사람은 주모자의 아버지가 장작을 쌓고 어머니가 불을 붙였다고 전했다. 이웃의 非行을 두고 5가구가 연대책임을 지는 5호연좌법(五戶連坐法)이 시행되고 있다 한다.²⁹⁾ 이러한 ‘끔찍한’ 극단사례와 조선시대의 五家作統法을 연상케하는 前근대적 통제수단에 의하여서라도 어쨌든 북한은 남한에서만큼 違法과 범죄가 많지는 아니한 사회로 비쳐지고 있다. 법의 통제적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일종의 靜寂社會로 만드는 것같이 보인다.

V. 남북통일과 통일법

이상의 서술이 남한은 남한법제, 북한은 북한법제로 너무나 이질화되어 도저히 공통점을 찾을 수 없는 두 체계인 것처럼 비쳐졌을 것이다.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남한법은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극단적인 개인주의적 법이고 북한법은 사회주의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주체사상의 법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법체계가 서로 대립해 있다는 것은 민족적 불행임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이질성 속에 은연중 한국적 공통성이 엿보이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어차

27) 리영애, 상계논문, 19면.

28) 자세히는 유석렬, “逸脫：원인·유형·통제 방법”, 「북한사회의 구조과 변화」, 경남대학교 국동문제연구소, 1987, 61~94면

29) 조선일보 1992년 1월 17일자, 20면.

피 북한법과 남한법을 합해야 온전한 ‘한국법’이 되겠지만, 남북한법이 40여년간 시행하면서 서양법 혹은 소련법이나 중국법과도 다른 ‘한국법’으로 토착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 면도 없지 않은 것이다. 그것을 논하기 전에 남북한의 변화에 주목해 본다면, 최근(1992. 5)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신웅식 변호사의 보고에 의하면,³⁰⁾ 북한의 김달현 부총리, 김정우 대외경제위원장, 최고인민위원회 법제부장 등과의 면담에서 북한은 법의 이원화(二元化)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두만강 경제특구(特區)를 개발하기 위하여 협영법(合營法)을 개정하여 합자투자법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 법에 의하면 외국기업이 100% 단독투자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한다. 그리고 소득세법도 개정하여 오는 8월 내지 9월이면 시행될 것이라 한다. 출입국관리법도 개정하여 북한에 비자(visa) 없이도 입국하여 도착 즉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철저한 사회주의법으로서의 북한법은 경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제한된 범위 안에서는 자본주의법을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최고인민위원회 법제부장은 “자본주의법과의 조화를 위하여 남한법률가들과도 접촉하고 싶다”고 표명했다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확인이긴 하지만 최근 보도된 북한헌법의 대폭 개정도 의미심장한 사건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 9기 3차회의에서 현행헌법을 수정하여 제 2 장 「경제」 가운데 「협동단체소유」를 규정한 제20조에 ‘개인소유의 인정 및 보호’ 구절을 추가하는 한편 단위기업소 이익의 일부를 소속근로자에게 속하게 하는 등 인센티브제 근거조항을 신설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제22조에 의해 개인소유로 인정되어온 ‘터밭’ 생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현재 북한에서 성행하고 있는 암거래수익도 개인소유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본격 경제개방에 대비하여 중국헌법을 본떠 외국기업과 경제조직, 개인의 경제적 권리와 이익보호를 규정하는 合營관련조항들도 신설했으며, 제31조의 「계획경제」를 「지도적 계획경제」로 고쳐 시장경제원리를 부분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을 높혔다. 세금의 전면폐지를 선언한 제33조 역시 「형편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다」고 고쳤다. 제54조의 「反종교선전의 자유」를 삭제하여 형식상 종교의 자유를 넓히기도 하였다. 정치이념구분에는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표현이 삽입되었으며, 김정일의 군통수권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을 목적으로 국가주석의 군통수권을 규정한 제93조를 수정하여 군통수권을 중앙인민위원회로부터 분리시킨 국방위원회로 이관시켰다.³¹⁾

30) 「북한법강좌」 제 2 회(코리아나 호텔, 1992. 5. 7)에서의 보고.

31) 조선일보 1992년 5월 15일자.

어쨌든 남북한법의 통일화 내지 收斂(convergence)은 아직까지의 현단계로서는 이렇다할 가시적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남북한기본합의서」에서도 상대방의 체제를 존중하기로 되어 있지만, 그 시행에 있어서도 지둔과 혼맥을 보여주고 있다.

남한측에서 「남북법률공동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였지만 북측의 반응은 냉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법통일은 정치적 진전과 함께 나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順理일 것이다. 독일에서도 민족통일을 위하여 法典화가 먼저 필요하나 여부를 두고 티보오(A. Thibaut)와 사비니(K. F. von Savigny)가 논쟁을 한 것은 고전적例이고, 결국 사비니의 주장처럼 법전화는 뒤늦어졌던 것이다. 그렇지만 (독일의 통일과정과 비교해 볼 때 더욱)³²⁾ 정치적 협상과 합의를 하는 과정 자체가 반복되면서 그것이 행사와 사건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조금씩 법률화, 문서화해 나가는 누적적 지혜로 통일에로 접근하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 북한은 독일 통일의 사례를 보고 난 후 더욱 ‘흡수식 통일’이란 말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공식적으로 독일식 흡수통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분석에 의하면, 남북통일은 점진적, 단계적이 아닌 한 순간의 사건으로 다가올 것이며 통일의 중심세력이 될 남한은 전반적인 문제를 감당하기 위해 통일비용으로 연간 500억 내지 600억 달러로 10년간 5~6천억 달러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리고 통일시기는 김일성체제의 개혁의 추진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붕괴되며 남북한은 앞으로 8년 후인 2,000년까지는 확실히 통일되며 95년 이전에 통일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다.³³⁾ 이 보고서는 외관상 북한은 안정되고 통일되어 있는 것 같지만 내막을 보면 놀랄 정도로 균열되어 있으며 동구권의 몰락에서 보듯 때만 오면 급속히 그리고 완벽하게 부서질 수 있는 사회라고 보았다. 만일 개혁이 올 경우 민중봉기도 가능하며 이같은 일은 김일성이 죽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지난 4월 80세 생일을 맞이한 그가 과거와 크게 달라진 90년대에 계속 견디어내기는 힘들 것이라 보았다. 한국의 통일도 독일과 같이 한 체제가 다른 체제를 흡수 통합하는 형식이 될 것이고, 통일이 되면 북한은 독일에서처럼 통일을 이룩한 남한의 여당을 지지할 것이라 하였다.

물론 이러한 전망은 외국의 한 민간연구소의 분석에 지나지 않지만, 남북한법제의 비교와 통일법의 대비와 관련하여 볼 때 점진적 수렴보다도 만일의 ‘흡수식’ 통

32) Chongko Choi, Rechtsprobleme wiedervereinigten Deutschland, *Deutschlandforschung*, B1.I. 1992, Seoul National University.

33) 중앙일보 1992년 5월 21일자. 이 분석은 「이코노미스트」산하 정보분석 및 자문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정보연구소」(EIV)의 4월에 발간한 「남북한 관계보고서」에 기초한 것이다.

일에 따른 법제의 대비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VII. 결 론

미국 하버드 대학의 헤롤드 베어만(Harold Berman) 교수는 사회주의법을 「스승과 어버이로서의 법 (law as teacher and parents)」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잘 이해하려면 類似종교적 법(pseudo-religious law)으로서의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³⁴⁾ 유사종교적 법으로서의 성격은,

- 1) 조국에 대한 사랑
- 2) 세계 노동자의 국제적 결속
- 3) 계급적 적(원쑤)에 대한 증오
- 4) 공산당 정책에 대한 완전한 지지
- 5) 사회적 이익을 위한 헌신적 희생
- 6) 사회적 인도주의(사회주의적 도덕원칙)
- 7) 사회주의적 소유권
- 8) 국가와 사회적 의무에 대한 고귀한 태도
- 9) 동지 시민의 명예와 품위, 공동생활의 규칙존중
- 10) 이웃에 대한 사랑
- 11) 노동의 신성에 대한 사랑

등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적어도 북한법에는 하나도 예외없이 적용된다고 하겠다. 북한사회가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신격화한 유사종교적 집단임은 여러 면으로 지적되는데, 북한법도 유사종교적 법으로서의 색채를 띠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것을 이를하여 주체법이론이니 사회주의 법무이론이니 하는 것 뿐이다.

이에 비해 남한법은 그보다는 개방적이고 '세속적'이지만, 남한법 역시 유사종교적 성격을 띠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故咸秉春박사가 잘 분석하였지만,³⁵⁾ 남한법도 전통적 유교윤리를 받아 서양과는 다른 「非법률적 문화(alegal culture)」를 구축하여 왔다. 이것이 정치적 불안정과 문화의 폐쇄화로 점점 가열되고 계토化해 왔다고 해도 그리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으로 안다.

어쨌든 남한법과 북한법은 이질화 속에서의 공통성을 갖고 있는 '한국법'의 부분

34) Harold J. Berman, *Justice in the USSR*, Harvard Univ. Press, 1963.

35) Pyongchoon Hahn, *The Korean Political Tradition and Law*, Hollym/Seoul, 1967 그리고 그의 *Korean Jurisprudence, Politics and Culture*, Yonsei Univ. Press, 1987.

들인데,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이질성과 동질성을 발견하여 가능한 한 통일법으로 수렴하는 일이다. 서론에서 잠시 비쳤듯이 남한법과 북한법은 자본주의법과 사회주의법의 상극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한국법으로서의 공통적 기반을 상당히 갖고 있다고 본다. 그것은 독일법이든 소련법이든 서양법을 받아들여 한국의 土壤위에서 시험하면 할수록 한국식 法治主義, 전통과의 조화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과 軌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주체법사상도 막스-레닌이론을 우리의 토양위에서 실현한 最良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가족법을 전형적인例로 하여 김일성을 정점으로 한 가부장적 국가 질서를 형성하여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으로 나아가는 것 등은 다분히 한국적인 법발전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한도 法治主義를 표방하는 名目보다 실질적으로는 法外法治主義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³⁶⁾ 異質化되고 있으며, 法治主義의 실현을 위하여 고민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공통적 문제점과 고민을 어떻게 어떤 자리에서 남북이 함께 토론하고 발전 방향으로 모색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실천적인 데에 있다. 그래서 「남북법률공동위원회」의 설치가 제안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북한에서 미온적 반응이라는 것이다. 법은 정치체제의 반영이라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정치적으로 예민하지 않은 부분부터 대화를 시작하면 남북의 법률가들이 공동의 지혜를 합리적으로 발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 임하는 법률가들은 되도록이면 기존의 정치체제와 이데올로기적 선입견을 배제하고 共同善을 향하여 합리적 지혜로 담론을 할 수 있는 능력과 良識을 갖는 인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에 이런 좋은 법률가들을 양성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이러한 이상을 공통적으로 인식하면서 노력해 나가는 차선책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체육계나 문화계의 남북교류에 못지 않게 중요하고 시급한 법률교류가 앞으로는 인적 교류를 통해 지금 까지의 제한된 문헌중심의 북한법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아니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전제로서 남북한의 법률가가 보다 민족공영의 길을 위한 법발전의 사명이 중차대합을 자각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냉철한 합리적 정신으로 남북법제의 비교와 통일법의 모색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6) 法外法이란 말은 이사야 벤다산이 그의 저서 '유대인과 일본인'에서 일본사회의 특징의 하나로 부른 이름이지만,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